

case  
6

##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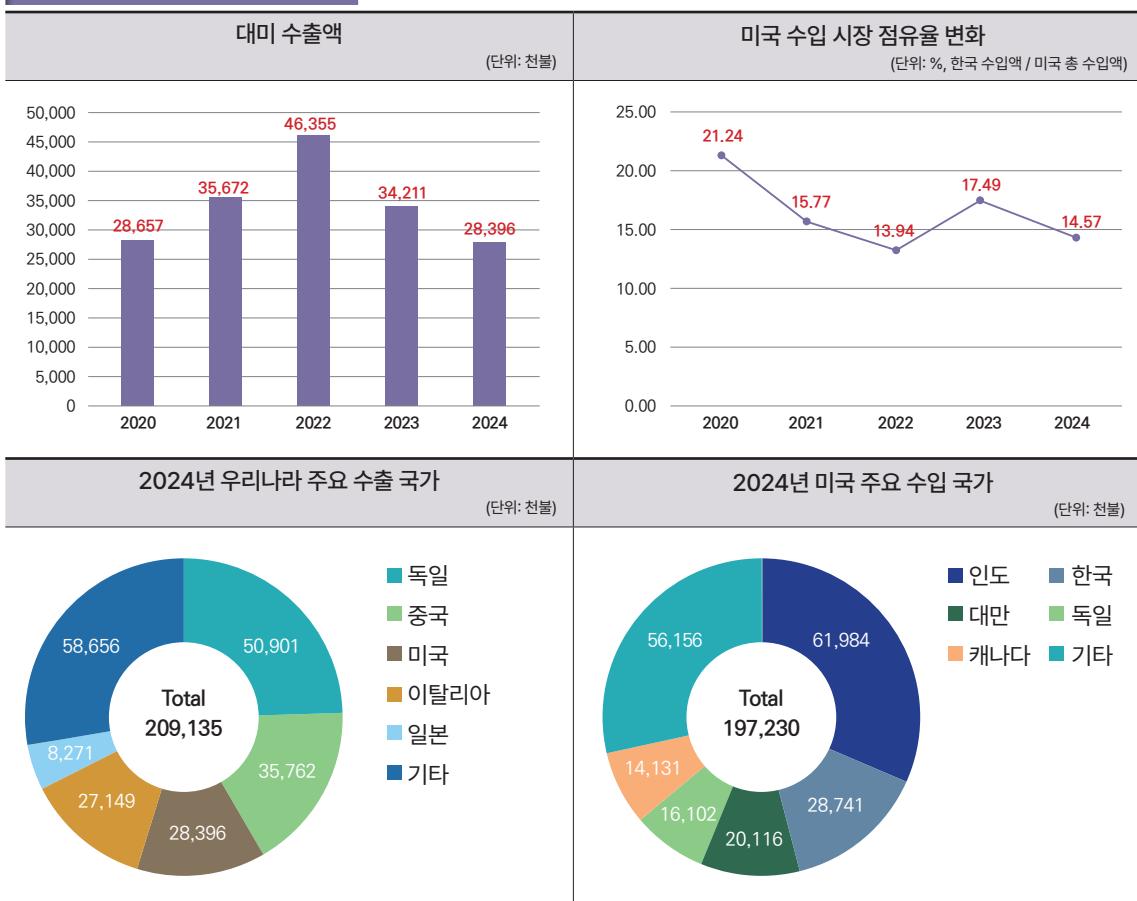
사례명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0677 (2021.08.25)
사실관계	한국, 대만 또는 인도산 와이어 로드(5.5mm 또는 7.5mm)를 호주로 수입하여 세척, 건조, 신장, 냉간 인발, 어닐링 등의 공정을 통해 1.8~5.4mm 스테인리스강 와이어로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신청자는 어닐링 공정이 기계적 특성을 변화시킨다고 주장(연성 증가, 경도 완화)하였으나, 본 사안에서 행해진 어닐링 공정은 와이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하거나 뛰어난 특성을 부여하지도 않고 특정 용도로 직접 사용될 준비가 된 제품으로 만들지도 않으며, 이러한 공정에 대한 처리 시간, 비용, 부가가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품목개요

### 품목정보

HS Code	제7223.0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제7223.0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 사례명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20677 (2021.08.25.)

#### 사실관계

요청자 Aqseptence Group, Inc.

제품명	•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구성	• Grade 304 또는 316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로드(한국, 대만, 인도산)
제품 용도	• 여과, 분리 및 수처리 기술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
원재료 HS Code	• 7223.00.1061 또는 7223.00.1076
완제품 HS Code	• 7223.00.1061 또는 7223.00.1076

#### 제조공정



#### 상세공정

- 직경 5.5 또는 7.5mm의 와이어 로드를 한국, 대만 또는 인도에서 호주로 수입
- 세척(Cleaning)
- 건조(Drying)
- 신장(Stretching)
- 냉간 인발(Cold-drawing)
- 어닐링(Annealing)
- 재권취(re-spooling)
- 완제품(직경 1.8288~5.4888mm에 해당하는 각 다른 사이즈의 6개 종류)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의 요건: 물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 가공 또는 결합 공정이 단순하여 물품의 본질적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단순한 와이어 드로잉(Drawing) 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

❖ 참고 판례: *Superior Wire v. United States*, 669 F. Supp. 472 (CIT 1987), aff'd, 867 F.2d 1409 (Fed. Cir. 1989)

**사례** 스페인산 와이어 로드(코일 형태)가 캐나다로 선적된 후 드로잉(Drawing) 공정을 거쳐 와이어로 가공되어 미국으로 수입

**판결** 와이어 로드가 와이어를 제조하는 것 외에는 용도가 거의 없으며, 이미 와이어 로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구성이 변화하여 최종 제품의 성질 및 용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Ferrostaal 판결에서 법원은 냉간압연 강판에 대한 '용융 아연 도금(hot-dip galvanizing)'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했는데, 해당 공정은 압연 과정에서 딱딱해진 강판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어닐링 공정과, 이를 녹은 아연에 담가 표면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성질을 부여하는 도금 공정의 두 단계를 포함  
 - 법원은 해당 사례에서 어닐링이나 도금 단독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 CBP는 어닐링이 복잡하거나 광범위하지 않으며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시,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어닐링은 일반적으로 와이어 신장 공정 이후 수행되어 단독으로는 제한된 용도의 고유한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판단  
 - CBP는 어닐링을 통한 실질적 변형 판단은 열처리의 범위(가공 시간, 비용, 복잡성 등), 해당 처리로 인한 부가가치, 강재의 기계적 특성과 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

#### 판정 결과

- ☞ 신청자는 어닐링 공정이 기계적 특성을 변화시킨다고 주장(연성 증가, 경도 완화)하였으나, 이는 와이어의 본질적인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판정  
 - 해당 공정은 와이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고유하거나 뛰어난 특성을 부여하거나 특정 용도로

## 관련 법령 및 분석

직접 사용될 준비가 된 제품으로 만들지도 않으며, 이러한 공정에 대한 처리 시간, 비용, 부가가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

### 기타 의견

- ▣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되며, 해당 제품(HTSUS 7223.00.1061, 7223.00.1076)은 해당 포고령에 따라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므로, 수입 시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와 함께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 결론

- ✓ 호주에서의 세척, 신장, 어닐링 등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초기 제조국인 한국, 대만 또는 인도임
- ✓ 완제품은 제232조 철강 제재 품목에 해당하여, 무역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II 시사점

- 어닐링 공정으로 인한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경우, 열처리의 범위, 생성된 부가가치, 강재의 기계적 특성과 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20677 (2021.08.25.), <https://rulings.cbp.gov/ruling/N320677>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Superior Wire v. The United States, William Von Raab, Commissioner of Customs, and District Director of Customs at Port of Detroit, Michigan (1989),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518523/superior-wire-v-the-united-states-william-von-raab-commissioner-of/?q=Superior+Wire+v.+United+States>